

입 소 계 약 서

이용자, 제공자 및 대리인(보호자)은 장기요양급여 중 시설급여 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한다.

계약당사자				
이용자 (갑)	성명	(인)	등 급 (인정번호)	등급 (L)
	생년월일		연락처	
	주 소			
	기 타	☐ 일반 ☐ 12%경감대상자 ☐ 8%경감대상자 ☐ 국민기초생활 수급권자		
제공자 (을)	시설명	신내노인요양원	시설종류	시설급여
	시설장 성명	최 은 숙 (인)	연락처	02) 490-2600
	주 소	서울시 중랑구 신내로 194 신내노인요양원		
대리인 또는 보호자 (병)	성 명	(인)	관 계	‘갑’ 의 ()
	생년월일		연락처	자택) 이동전화)
	주 소			

제1조 【 목 적 】

노인성질환 등으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노인(장기요양급여수급자)에게 시설급여서비스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한다.

제2조 【 계약기간 】

- ① 계약기간은 20 년 월 일부터 20 년 월 일까지로 한다.
- ② 1항의 기간은 당사자 간의 협의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.
- ③ 계약내용 변경사항(장기요양 인정등급, 장기요양 급여비용, 비급여비용 등) 발생시 이를 즉시 반영한다.
- ④ 이 계약은 계약해제가 없거나 쌍방 간의 입소생활에 이의가 없고 퇴소 요청이나 의사표명하지 않을 경우 이전 계약은 존속 유효하며 내용은 계속 적용된다
- ⑤ ‘갑’ (또는 ‘병’)이 계약기간 만료 또는 그 이전에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로부터 15일 전에 신청해야 한다. 다만, 부득이한 경우에는 유선으로 통보할 수 있다

제3조 【 입소 · 이용료 납부 】

- ① 다음 사항은 “갑” 이 본인부담금 대상자 일 경우에 적용 된다
- ② ‘갑’ 의 입소당월 이용료는 20 년 월 일에 납부하기로 한다.
입소당월 이후 매월 이용료는 매월 3일 납부하기로 한다.
(납부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 익일로 한다)
- ③ ‘갑’ (또는 ‘병’)은 본인일부부담금과 비급여 항목에 대한 비용을 전액 지불하여야 한다.
- ④ ‘갑’ 의 이용료 납부방법은 _____로 한다.
- ⑤ ‘갑’ 또는 ‘병’ 의 요구에 의한 개별적인 물품·용역의 구입과 개별적인 희망에 의해 외부 서비스 제공자가 개인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프로그램·서비스에 따른 실비는 ‘갑’ 또는 ‘병’ 이 별도 부담한다.
- ⑥ 급여대상자의 요청에 의한 개인적 서비스요금등과 진료 및 입원비용과 간병비는 ‘갑’ 과 ‘병’ 이 전액 부담한다.
- ⑦ 기타 이용자 개인의 요구에 의한 경비발생에 대하여 ‘갑’ 과 ‘병’ 이 전액 부담한다.

제4조 【 이용자부담금의 변경 】

- ① 이용자 부담금의 변경은 보건복지부에서 수가 고시가 있을 때는 별도 변경계약 절차없이 개정한 것으로 본다.
- ② 비급여 항목 중 식사재료비는 물가상승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.
- ③ 이용자부담금의 예외로 이용기간 중 의료기관에 입원하거나 시설장의 허가를 받아 외박 한 경우에는 최대 10일까지는 해당 요양 등급별 1일당 수가 중 본인부담금의 50%를 납부해야 한다. 단,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 수가산정이 변경될 때에는 별도의 변경계약 절차 없이 변경규정으로 적용한다.

□ 장기요양등급별 급여비용

(단위:원)

등급	등급단가	본인부담금				
		기준일	일반(20%)	경감(12%)	경감(8%)	기초 수급권자 (0%)
1등급	90,450	30일	542,700	325,620	217,080	-
		31일	560,790	336,474	224,316	
2등급	83,910	30일	503,460	302,076	201,384	
		31일	520,242	312,145	208,097	
3~5등급	79,240	30일	475,440	285,264	190,176	
		31일	491,288	294,773	196,515	

□ 비급여

(단위:원)

구분	1일 기준	28일 기준	30일 기준	31일 기준
식사비(3식) *간식 2식 포함	15,000	420,000	450,000	465,000
상급실 이용료	1인실 월 403,000원 추가 (13,000원/일)			
이미용	자원봉사자 활용하여 시설에서 제공(단, 시설에서 제공하는 범위 외의 이미용 서비스는 본인 또는 보호자 부담)			

※ 요양급여비용은 매년 장기요양위원회(위원장 : 보건복지부 차관)가 결정, 고시하는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(보건복지부)에 따름

< (안내) 수급자 자격별 본인일부부담 비율 >

구분	시설급여	재가급여
일반	20%	15%
기초수급권자	0%	0%
기타 의료수급권자 차상위 의료급여 건강보험 자격전환자 (희귀난치성, 만성질환자)	12%	9%
저소득층 (본인일부부담금 감경을 위한 소득재산 등이 일정금액 이하인 자에 관한 고시 해당자)	8%	6%

※ [근거규정] 노인장기요양보험법

제40조(본인일부부담금) ① 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수급자가 부담한다. 다만, 수급자 중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수급권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1. 재가급여 :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5
2. 시설급여 :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20

◇ 세부내역(30일 기준)

구 분		금액(원)	내 역
총 계			
요양보험 부담비용	소 계		
	요양급여비용(%)		
개인 부담비용	소 계		
	요양급여비용(%)		
	식사재료비/간식비		
	상급침실 이용료		

< (안내) 비급여 대상 항목 및 기타 실비 수납기준 >

1. 비급여 항목 세부기준

1) 기본원칙

- 비급여 항목은 식사재료비, 상급침실 이용에 따른 추가비용, 이·미용비이며, 그 밖의 비용은 기관에서 임의로 수납할 수 없음
- 해당 비용은 원칙적으로 해당 용역을 제공하기 위한 실제 소요비용(실비)만을 산정해야 하며, 별도의 이윤부가 불가

2) 세부기준

(1) 식사재료비 : 경관영양 유동식, 간식도 식재료비의 일종임

(2) 상급침실 이용료

- 1인실 또는 2인실 사용하는 경우 일반실에 비해 추가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에 대해 수납
- 상급침실은 (a) 반드시 고정된 벽으로 다른 공간과 구분되어 있고(파티션, 커튼 등은 불가), (b) 독립된 출입문을 갖추며, (c) 노인복지법 시설·설비기준에 의거한 1인당 면적기준(개정법 6.6㎡)을 충족하여야 함

(3) 이·미용비 : 수급자 희망에 의해 이·미용사 초빙하여 서비스 받는 경우 비급여 가능, 단, 시설종사자·자원봉사자에 의해 제공되는 서비스는 비급여 항목으로 수납 불가, 손·발톱 정리 등의 명목으로 별도 수납은 불가

2. 비급여 항목 외 실비 수납기준 : 수급자가 개별적으로 요구하는 물품 및 용역을 시설에서 구매하여 제공하는 경우 실비를 수납할 수 있으며, 기관은 실비 이외에 추가비용을 수납하지 못함

제5조 【 계약자 의무 】

‘갑’ 과 ‘을’ 그리고 ‘병’ 은 다음의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.

① ‘갑’ 의 의무

1. 월 이용료 납부
2. 시설의 건전한 생활분위기 조성에 협조
3. 시설 내에 개인 애완동물 사육금지 등 청결
4.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
5. 기타 시설생활 규칙 이행

② ‘을’ 의 의무

1. ‘갑’ 의 건강관리 협조
2. ‘갑’ 의 신변이상을 ‘병’ 에게 즉시 연락
3. 식사제공 및 생활상담, 조언 및 생활편의 제공
4. 건물 및 부대시설의 청결 및 유지관리
5. 기타 ‘갑’ 의 안락한 노후생활에 필요한 협조

③ ‘병’ 의 의무

1. ‘갑’ 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
2. ‘갑’ 의 월 이용료 등 입소비용 부담
3. 인적 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
4. ‘갑’ 의 의무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‘을’ 에게 통보
5. 기타 시설생활 규칙이행

제6조 【 계약해지 요건 】

① ‘갑’ 의 해지

‘갑’ 과 ‘병’ 은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퇴소를 결정할 수 있으며,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로부터 15일전에 신청해야 한다. 다만, 부득이한 경우에는 유선으로 통보할 수 있다.

② ‘을’ 의 해지

1. ‘갑’ 의 건강진단 결과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」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
2. 타입소자의 안전과 인권에 심대한 위협이 될 때
3. 입소신청서의 허위 사항 기재 등 부정 수단으로 입소할 경우
4. ‘갑’ 이 10일을 초과하는 장기입원 및 외박이 있을 경우
5. ‘갑’ 이 배회성이나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, 정신과적 문제로 타 입소자의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, 본 시설안전관리로 안전을 보장하기 어려울 경우
6. ‘갑’ 이 근무자들에게 폭언이나 모욕, 성적수치심등의 현저한 피해를 주었을 때

7. ‘갑’ 이 스스로에게 가해를 하거나 자해를 시도하는 경우
8. 기타 각 조항의 계약을 위반했을 때
9. 본인부담금 또는 기타 ‘갑’ 이 ‘을’ 에게 납부해야할 비용 등을 10일 이상 미납할 경우
10. ‘갑’ 의 이용료를 2회 이상 납부하지 않고 연체하였을 때
(단, ‘을’ 은 ‘갑’ 에게 서면으로 이용료 납부를 최고하고 ‘갑’ 또는 ‘병’ 이 최고를 받은 날부터 14일까지 이용료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)

제7조 【 퇴소 】

- ① ‘갑’ 은 제5조 ②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해지 요건 시 이에 대한 증빙서류와 함께 계약 해지 의사를 ‘을’ 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.
- ② ‘갑’ 과 ‘병’ 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, 본원 소정의 퇴소신청서를 작성하여 ‘을’ 에게 제출하고 ‘갑’ 의 보관물품을 인수하여 퇴소하여야 한다. 단, 사유물품을 1년 이내에 인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‘병’ (또는 ‘갑’)에게 통보 후 ‘을’ 이 자체적으로 처리할 수 있으며, 이에 대해 ‘갑’ 또는 ‘병’ 은 이의를 제기 할 수 없다.
- ③ ‘을’ 은 ‘갑’ 이 퇴소 시 이용료 잔액에 대하여 현금 또는 ‘갑’ 이 지정한(또는 ‘병’)계좌로 지체 없이 지급한다.

제8조 【 입소물품 】

‘갑’ 은 시설입소 시 개인물품을 ‘을’ 과 협의하여 반입할 수 있다.

제9조 【 면회 및 외출·외박 】

- ① ‘갑’ 의 면회시간은 매일 09:00시부터 18:00까지로 한다.
(단 ‘갑’ 과 ‘을’ 또는 ‘병’ 이 동의할 경우 변경 할 수 있다).
- ② ‘갑’ 은 외출·외박시 사전에 ‘을’ 에게 신청하여야 한다.
- ③ ‘을’ 이 제공하는 음식물 이외의 음식물을 ‘갑’ 이나 ‘병’ 이 반입하고자 할 때에는 ‘을’ 과 협의 후에 반입하여야 한다.
- ④ 외출·외박 중 ‘갑’ 에게 신체적·정신적 변화 등의 사항이 발생할 경우 ‘갑’ 또는 ‘병’ 은 ‘을’ 에게 즉시 사실을 알려야 한다.

제10조 【 시설관리 】

- ① ‘을’ 은 보건, 위생, 방범, 방화 기타 생활에 필요한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시설 직원이 거실을 출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.
- ② ‘을’ 은 원무 행정상 필요한 경우 입소자의 거실을 재배치 할 수 있다.
- ③ ‘갑’ 은 거실 등 공용부분 외 이용방법 등에 관한 “을” 의 주의에 따라서 관리자

의 주의에 의해 이용하지 않으면 안 된다.

- ④ ‘갑’ 또는 ‘병’은 ‘을’의 시설물을 이용함에 있어 ‘갑’ 이외에는 이용할 수 없으며 ‘갑’ 등의 가족이 간병 등 일시 이용이 필요 할 경우 사전에 ‘을’에게 승낙 받아야 한다.
- ⑤ ‘갑’은 거실을 주거로서만 이용하는 것으로써 그 이외의 목적으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.
- ⑥ ‘갑’은 공용부분을 ‘을’ 및 다른 이용자가 용인하기 어려운 목적으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.

제11조 【 건강관리 】

- ① ‘을’은 ‘갑’의 건강 및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‘을’과 종사자들에게 연 1회 이상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.
- ② ‘갑’이 질병 또는 상해로 인하여 진료가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에는 의사의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.
- ③ 의사의 진료결과 입원이 필요한 질병이나 월 1회 이상 장기간 진료가 요구되는 경우 진료비와 부가서비스 경비(교통비, 외부간병인 등)는 ‘갑’ 또는 ‘병’에게 별도 징수한다.
- ④ ‘을’은 입소시 갑의 건강상태 등을 확인하고 기록함은 물론, ‘갑’에 대한 적절한 건강관리를 하여야 하며, ‘갑’의 건강유지, 악화방지를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.
- ⑤ ‘을’은 갑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활력증상 확인, 투약관리, 욕창관리, 낙상방지 등 건강관리 활동을 하여야 한다.
- ⑥ ‘을’은 ‘갑’이 의사로부터 월 2회 이상 건강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하며, 이상시 지체없이 ‘병’에게 통보한다.
- ⑦ ‘을’은 ‘갑’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필요시 물리치료를 제공해야 한다.

제12조 【 시설물 배상 】

- ① ‘갑’은 ‘을’의 시설물에 대하여 그 본래의 용도로 사용해야 하며, ‘갑’에 의한 시설물의 파손 또는 멸실에 대하여는 ‘갑’ 또는 ‘병’이 원상회복 하여야 한다.
- ② ‘갑’ 또는 ‘병’이 원상회복을 할 수 없을 때에는 ‘을’은 시설물의 잔존가치 등을 고려하여 실비로 산출한 비용을 그 내역과 함께 문서로 제시하고 ‘갑’ 또는 ‘병’은 이에 대하여 납부하여야 한다.

제13조 【 위급시 조치 】

- ① ‘을’은 ‘갑’의 생명이 위급한 상태라고 판단된 때에는 협약병원, ‘갑’(또는

‘병’)이 지정한 병원 또는 관련 의료기관으로 즉시 후송하고 ‘병’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.

- ② ‘병’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았을 때에는 신속하게 대처하여야 한다. 다만 대처가 어려울 경우에는 우선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.
- ③ ‘갑’이 사망하였을 경우에 ‘을’은 즉시 병원으로 후송하고 ‘병’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. 단 ‘병’과 사전에 협약이 있을 경우, ‘을’이 장례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.
- ④ 위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가 불가능할 때 ‘을’은 ‘갑’의 입소 월액 또는 시설의 운영비로 화장 및 매장에 의한 장례를 집행하고 추후에 ‘병’과 정산할 수 있다.

제14조 【 임종 및 장례 】

입주자의 임종 및 장례절차는 가족이나 연고자가 있을 경우와 무연고자를 구별하여 한다.

- ① 가족이나 연고자가 있을 경우
 - 1. 임종이 임박하였을 시 치료 및 입원은 ‘병’과 협의하여 결정한다.
 - 2. 장례는 ‘병’ 또는 신원인수인의 정함에 따라 가족이 장례절차의 모든 것을 수행하게 한다.
- ② 무연고자
 - 1. 임종이 임박하였을 시 치료 및 입원은 ‘갑’의 책임 하에 결정한다.
 - 2. 장례는 행정기관과 협의하여 행정절차에 의거하여 장례가 수행될 수 있도록 한다.
 - 3. 1개월 이내 관할 동(읍, 면)사무소에 사망신고를 한다.

제15조(신원인수인)

- ① ‘갑’의 신원인수인은 “병”으로 한다.
- ② 전항의 신원인수인은 이 계약에 기인하여 ‘갑’이 ‘을’에 대한 채무가 있을 경우, 채무 일체(一切)에 대하여 ‘갑’의 보호자로서 책임을 진다.
- ③ ‘갑’의 신원인수를 “병”이 부득이하게 인수치 못할 경우 ‘정’이 인수한다. 단 “병”이 위임한 자가 있다면 위임받은 자가 우선으로 인수한다.

제16조 (사망 시 신원인수 등)

- ① ‘갑’의 사망 시 제20조의 신원인수인은 2시간 이내에 시신을 인수하여야 한다.
- ② 신원인수인이 시신인수를 거부하거나 사망 후 3일까지 연락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일체의 모든 권한과 의무를 포기한 것을 간주하며 추후 어떠한 문제 제기를 할 수 없다. 이때 ‘을’이 장례를 시행하며, 그 비용은 어르신 연금잔액으로 처리하거나

추후 ‘병’에게 부담한다.

제17조 【 식사 및 간식 】

- ① ‘을’은 1일 3식 및 간식을 ‘갑’에게 제공하며, ‘갑’의 상태에 따라 특별식을 제공할 수 있다. 특별식(경관급식비 등) 비용이 일반 수급자의 식재료비/간식비를 초과하는 부분은 ‘갑’ 또는 ‘병’이 별도 부담한다.
- ② ‘을’은 식단표 및 간식제공계획에 대하여 사전에 ‘갑’에게 제공하고 게시하여야 한다.

제18조 【 영양실의 배정 】

‘갑’의 영양실 배정은 입소순서에 따르며, 입소 후 ‘갑’의 건강상태, 수발조건,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변경할 수 있으며 ‘갑’ 또는 ‘병’의 의견을 반영하여 ‘을’이 조정할 수 있다.

제19조 【 개인정보 보호의무 】

- ① ‘을’은 ‘갑’의 개인정보를 관계규정에 따라 보호하여야 한다.
- ② ‘을’은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‘갑’의 개인 정보 자료를 수집하고 활용하며 동 자료를 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주체 등에게 관계규정에 따라 제출할 수 있다.
- ③ ‘갑’의 개인정보수집 및 활용에 대한 승낙은 서면(개인정보수집 및 활용 동의서)으로 한다.
- ④ ‘갑’은 ‘을’이 수집·관리하는 본인의 개인정보에 대해 알 권리가 있다.
- ⑤ ‘을’은 ‘갑’의 사생활을 존중하고,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는 철저히 비밀을 보장한다.

제20조 【 기록 및 공개 】

수급자의 생활과 장기요양서비스에 관한 모든 내용을 상세히 관찰하여 정확히 기록하고, 수급자나 가족이 요구할 경우 표준양식에 의거한 기록을 공개하여야 한다.

제21조 【 배상책임 】

- ①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‘을’은 ‘갑’에게 배상할 의무를 진다.
 1. 시설 종사자의 고의나 과실로 인하여 ‘갑’을 부상케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
 2. 상한 음식을 제공하였거나 약을 잘못 투약하여 ‘갑’의 건강을 상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
 3. 시설장비 또는 시설관리가 부실하여 ‘갑’을 부상케 하거나,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

4. 학대(노인복지법 제1조의2 제4호의 노인 학대 및 같은 법 제39조의9의 금지행위를 말한다)로 인하여 ‘갑’의 건강상태가 악화되거나, 사망에 이르게 되었을 때
- ②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‘갑’은 ‘을’에게 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.
 1. 시설 내에서 자연 사망하였을 때
 2. 시설 내, 외에서 자살하였을 경우
 3. ‘을’이 선량한 주의의무를 다했음에도 ‘갑’이 임의로 외출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하였을 때
 4. ‘갑’과 병 ‘이 임의로 한 외출 또는 외출 중에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하였을 경우
 5. ‘갑’이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하였을 때
 6. ‘갑’이 본인의 고의, 과실 및 부주의 또는 병력, 질환이나 지병으로 인하여 골절 및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하였을 경우
 7. ‘갑’이 야외나들이나 프로그램 활동 중 생기는 사고로 인한 상해나 사망에 대하여
 8. 제 3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손해
(ex:입소 중 다른 입소자에게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하였을 경우)
 9. ‘병’의 고의, 과실 및 부주의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하였을 경우
 10. 입소계약 시 밝히지 않은 질병에 의해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하였을 경우
 11. 입소 중 개인 소지의 금, 물품을 분실했을 경우

제22조 【이용계약서의 해석】

- ① 이 계약서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민법이나 사회상규에 따른다.
- ② 본 계약으로 발생하는 소송은 민사소송법상의 관할 소재지 법원에 제기한다.

위와 같이 계약을 체결하고 본 계약체결을 증명하기 위하여 쌍방이 계약서를 작성 날인 후 각각 1부씩 보관기로 한다.

202 년 월 일

(계약자)	‘갑’ 이용자	(인)
	‘을’ 시설장	최 은 숙 (인)
	‘병’ 대리인(보호자)	(인)

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

성 명 : (생년월일 :)
주 소 : 서울시 중랑구 신내로 194

1. 수집대상정보

- 장기요양급여 관련 정보
- 이용자의 지역연계 관련 정보
- 관련기관 정보제공 요청시 필요한 정보
- 기타 목적사업 수행에 필요한 정보

2. 수집정보의 활용범위

- 대상자 급여 관련에 필요한 정보의 활용
- 제공기관 간의 서비스 연계와 관련사항에 관한 대상자 정보 제공
- 관련기관 정보제공 요청시 제공
- 장기요양계획, 욕구조사, 장기요양서비스 질 수준 향상 등에 활용

상기 본인은 개인정보를 제공하고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.

202 년 월 일

이 용 자(갑) : (인)

대리인(보호자)(병) : (인)